

공적연금 역할과 정책방향

2013.03.22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목차

1. PROLOGUE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선진국 연금개혁 동향

4. 공적연금 개선방향

5. EPILOGUE

PROLOGUE

-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2007년 7월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으로 급여수준이 조정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매우 큰 변화가 있었고, 2009년 공무원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 제도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었지만 재정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인지는 불명확
-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은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존의 국민연금의 관계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상태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조치로 단기적으로 연금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연금급여 삭감 재정효과가 구현되는 구조이지만, 현재의 연금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자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정부재정부담은 매우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기초연금관련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민행복연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재정 불안 등이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음.
- 100세 시대 도래로 상징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의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공적연금 체계가 정립되고 인구고령화가 전개된 OECD 국가들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CONTENTS

1. PROLOGUE

2. 공적연금 재정전망

- 2.1 국민연금 재정전망
 - 2.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 2.3 사학연금 재정전망
 - 2.4 군인연금 재정전망
-

3. 선진국 연금개혁 동향

4. 공적연금 개선방향

5. EPILOGUE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시나리오

시나리오 구분	평균수명 가정 (2070년 기준)	합계출산률 가정 (2030년 이후)
시나리오 I	통계청 가정 (남: 82.87세, 여: 88.92세)	통계청 가정 (1.28명)
시나리오 II		정부목표 (1.70명)
시나리오 III	평균수명 연장 (남: 87.99세, 여: 93.36세)	통계청 가정 (1.28명)
시나리오 IV		정부목표 (1.70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단위: %)

구 분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100
실질경제성장률	4.1	2.8	1.7	1.2	0.9	0.7
실질임금상승률	3.6	3.3	2.9	2.6	2.5	2.5
실질금리	3.6	2.9	2.4	2.2	2.0	1.8
실질기금투자 수익률	4.2	3.4	2.8	2.6	2.4	2.2
물가상승률 ¹⁾	2.7/2.4		2.0			

주: 1)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8)을 바탕으로 2078년 이후 가정은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2.7%는 2011~2015년, 2.4%는 2016~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 이하 전망자료는 '윤석명 외(2011).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 인용.

국민연금 재정전망

- 기본가정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2100년의 제도적 부양비는 150%를 초과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천명)

연도	평균수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가입자수 (가)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제도 부양비 (나/가)	가입자수 (가)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제도 부양비 (나/가)
2010	19,117	2,094	11.0%	19,117	2,094	11.0%
2020	19,268	3,406	17.7%	19,273	3,498	18.2%
2030	16,624	5,694	34.3%	16,630	5,930	35.7%
2040	13,704	8,639	63.0%	13,715	8,969	65.4%
2050	11,637	10,355	89.0%	11,652	10,956	94.0%
2060	9,377	10,577	112.8%	9,399	11,466	122.0%
2070	7,999	9,503	118.8%	8,025	10,873	135.5%
2080	6,834	7,921	115.9%	6,861	9,717	141.6%
2090	5,668	6,398	112.9%	5,693	8,255	145.0%
2100	4,709	5,378	114.2%	4,732	7,109	15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준 가정: 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십억원, 배)

연도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적립률 ³⁾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⁴⁾
	계	보험료 수입 ¹⁾	투자 수익			경상가	2010년 불변가 ²⁾			
2010	44,763	21,275	23,488	8,834	35,929	319,380	319,380	37.1	0.8%	3.6%
2020	92,928	41,893	51,036	27,563	65,365	831,421	646,352	28.1	1.3%	5.8%
2030	142,629	66,521	76,108	73,980	68,649	1,481,476	944,802	19.2	2.2%	9.9%
2040	185,597	95,882	89,716	168,361	17,236	1,921,694	1,005,377	11.4	3.4%	15.7%
2050	202,836	135,606	67,230	312,100	-109,263	1,438,839	617,526	5.0	4.6%	20.6%
2060	171,724	171,724	0	492,824	-321,100	-	-	-	5.5%	25.7%
2070	228,411	228,411	0	689,559	-461,148	-	-	-	5.9%	27.0%
2080	301,789	301,789	0	907,413	-605,624	-	-	-	5.9%	26.9%
2090	388,665	388,665	0	1,218,116	-829,451	-	-	-	6.1%	28.0%
2100	504,568	504,568	0	1,917,068	-1,412,500	-	-	-	7.3%	34.0%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 재정 전망결과 요약

합계출산율 가정	평균수명 가정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1.28명	기존 가정	2058년	0.8%(2010년) 5.9%(2070년) 7.3%(2100년)	3.6%(2010년) 27.0%(2070년) 34.0%(2100년)
	평균수명 연장	2056년	0.8%(2010년) 6.7%(2070년) 11.7%(2100년)	3.6%(2010년) 30.6%(2070년) 53.8%(2100년)
1.70명	기존 가정	2059년	0.8%(2010년) 5.9%(2070년) 8.6%(2100년)	3.6%(2010년) 20.8%(2070년) 24.0%(2100년)
	평균수명 연장	2057년	0.8%(2010년) 6.7%(2070년) 13.2%(2100년)	3.6%(2010년) 23.5%(2070년) 36.8%(2100년)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인구시나리오 구분		재정평가시점 2080년 (2033년 이후 보험료율)			재정평가시점 2100년 (2033년 이후 보험료율)		
합계 출산율 가정	평균 수명 가정	기금소진 미발생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합계 출산율 1.28명	기존 가정	14.30%	14.80%	15.75%	16.65%	17.05%	17.75%
	수명 연장	15.85%	16.45%	17.60%	19.75%	20.30%	21.45%
합계 출산율 1.70명	기존 가정	12.85%	13.35%	14.25%	14.60%	15.00%	15.75%
	수명 연장	14.25%	14.85%	15.90%	17.30%	17.85%	18.95%

주: 현재 9% 보험료율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8년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고갈년도가 2년에서 4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 부과방식 보험료 (적립기금 없이 당년도 재정지출을 당년도 연금보험료로 조달함을 가정할 때의 보험료) 변화는 보다 심각함. 기본가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2070년에는 27%에서 2100년에는 34%로 높아짐.
-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부과방식보험료는 50%대로 높아지고 저출산이 완화되면 24% 수준으로 낮아짐
-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연금급여 수준은 2028년까지 40년 가입 40%로 인하토록 되어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2013년부터 시작됨 (5년 간격으로 1세씩 65세 까지 상향조정).
-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노령연금의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출 규모가 2011년 GDP대비 0.4%에서 2030년에는 1.7%로 확대 (한국은행 전망)
- 국민연금의 재정은 선진외국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연금보험료 인상 이외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제한적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재직자수와 연금수급자 현황

연도	재직자수 (가)	연금수급자				부양률 (나)/(가)
		합계(나)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1982	667,554	3,742	3,556	140	46	0.6
1985	696,951	9,078	8,691	290	97	1.3
1990	843,262	25,396	23,844	1,355	197	3.0
1995	957,882	56,343	51,713	4,267	363	5.9
2000	909,155	150,463	140,387	9,412	664	16.5
2005	986,339	218,006	196,820	19,197	1,989	22.1
2009	1,047,897	293,096	260,910	29,489	2,697	27.7

주: 부양률은 공무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장해연금 및 장해유족연금수급자 제외)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0), 2009년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 급여지출 추이

(단위: 억원)

연도	계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1982	161	144	13	-	4	0
1985	231	199	22	-	6	5
1990	718	619	69	-	10	20
1995	2,627	1,834	120	614	20	39
2000	4,361	3,130	138	1,054	23	16
2005	5,945	4,367	300	1,196	58	24
2009	7,684	6,234	477	884	61	2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0), 2009년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이

연도	기금회계		연금회계		
	기금총액	기금운용수익	수입계 ¹⁾ (가)	지출 ²⁾ (나)	수지차 (가)-(나)
1982	770	114	268	161	107
1985	1,780	176	373	234	140
1990	3,579	335	790	724	66
1995	5,150	547	1,999	2,637	-639
2000	1,775	92	3,437	4,383	-946
2005	3,830	508	5,899	5,899	0
2009	5,187	501	7,630	7,630	0

주: 1) 당해년도 공무원기여금과 정부보조금의 합계로 연금수입을 뜻함. / 2) 당해년도 급여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연금지출을 의미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0), 2009년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연도	급여지출	보험료수입	정부보전금	급여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2010	7,255	5,908	1,348	18.6%
2015	13,567	8,852	4,716	34.8%
2020	22,046	12,007	10,038	45.5%
2025	33,047	15,168	17,879	54.1%
2030	48,084	20,120	27,964	58.2%
2035	64,387	26,266	38,121	59.2%
2040	82,571	33,913	48,658	58.9%
2045	97,769	43,440	54,329	55.6%
2050	113,058	54,154	58,905	52.1%
2055	141,160	66,734	74,426	52.7%
2060	179,138	82,281	96,858	54.1%
2065	226,763	102,313	124,450	54.9%
2070	286,186	128,752	157,433	5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학연금 재정전망

사학연금 가입자수와 수급자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2008	2009	2010
가입기관	5,483	5,641	5,794
재직자	256,840	261,608	267,481
퇴직자	26,256	25,385	28,380
연금수급자	31,253	34,052	37,275
- 퇴직연금	28,673	31,177	34,047
- 유족연금	2,580	2,875	3,228
연금선택률	91.3%	91.1%	91.1%
부양률	12.2%	13.0%	13.9%

주: 가입기관과 가입자수, 수급자수는 연도 말 기준임.
 자료: 사학연금공단(2011), 2010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학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총수입(A)	17,119	27,387	30,362
부담금(C)	15,765	15,435	19,656
운용수익	1,354	11,952	10,706
총지출(B)	17,129	16,536	16,968
급여(D)	13,730	14,188	15,782
운영비등	3,399	2,348	1,186
수지	A-B	△10	13,394
	C-D	2,035	3,874

자료: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2011).

사학연금 재정전망

사학연금 제도내 인구수 전망

(단위: 명)

연도	가입자	퇴직자	신규가입자	연금수급자		
				퇴직연금 (A)	유족연금 (B)	합 계 (A+B)
2010	265,451	25,826	30,805	33,835	3,084	36,919
2020	295,569	30,092	31,090	72,453	6,556	79,009
2030	296,267	30,315	30,654	120,050	12,407	132,457
2040	295,434	29,793	29,210	145,137	19,029	164,166
2050	282,526	28,408	26,688	150,107	22,330	172,437
2060	259,265	25,778	23,070	157,427	19,571	176,998
2070	229,451	22,780	19,642	162,876	16,854	179,730
2080	197,770	19,728	16,595	161,188	15,872	177,0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학연금 재정지표 전망결과

(단위: %)

연도	부양 비율	지출 비율	수입 비율	수지 비율	적자보전율		기금 적립률
					보수 대비	GDP 대비	
2010	13.91	10.23	18.13	56.41	-7.90	-0.09	816.52
2020	26.73	15.51	18.77	82.64	-3.26	-0.04	538.52
2030	44.71	22.21	15.04	147.71	7.17	0.10	81.50
2040	55.57	24.72	14.00	176.53	10.71	0.18	0.00
2050	61.03	26.20	14.00	187.11	12.19	0.22	0.00
2060	68.27	29.95	14.00	213.94	15.95	0.32	0.00
2070	78.33	34.45	14.00	246.09	20.45	0.43	0.00
2080	89.53	38.94	14.00	278.11	24.94	0.54	0.00

주: 1) 지출률=지출/보수총액 / 2) 수입률=수입/보수총액 / 3) 수지율=지출/수입 / 4) 적자보전율=적자(지출-수입)/보수총액(또는 GDP)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군인연금 재정전망

군인연금 신규수급자수 현황

(단위: 명)

기여금 납부자수	전역자 (합계)	정상 전역			사고 전역				
		소계	19년 6월 미만	19년 6월 이상	소계	상이 연금	유족 연금	유족 일시금	기여금 반환
169,814	20,960	20,776	17,469	3,307	184	68	82	31	3

군인연금 신규수급자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급자수	64,722	66,785	68,537	70,865	73,445	76,358	79,453
증가 (명)	-	2,063	1,752	2,328	2,580	2,913	3,095
비율 (%)	-	3.19	2.62	3.40	3.64	3.96	4.05

2011년도 군인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억원)

지 출				수 입				
계	퇴직 급여	재해보상 급여, 퇴직수당	기금 관리비	계	자체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소계	국가부담금	보전금
23,523	20,051	3,466	6	23,523	3,484	20,039	7,773	12,2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군인연금 재정전망

군인연금 개정안에 대한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

연도	보수 예산	현행				개정안				개선효과 (b-a)/a
		수입	지출	보전금 (a)	보전율	수입	지출	보전금 (b)	보전율	
'10	4,395	1,181	2,237	1,056	24.0%	1,286	2,237	951	21.6%	-9.9%
'15	6,337	1,670	2,996	1,326	20.9%	2,002	2,995	993	15.7%	-25.1%
'20	8,798	2,354	4,048	1,694	19.3%	2,781	4,045	1,264	14.4%	-25.4%
'25	11,716	3,172	5,434	2,262	19.3%	3,775	5,425	1,650	14.1%	-27.1%
'30	15,082	4,266	7,729	3,463	23.0%	5,036	7,707	2,671	17.7%	-22.9%
'35	19,388	5,369	10,378	5,009	25.8%	6,360	10,325	3,965	20.5%	-20.8%
'40	24,696	6,858	13,852	6,994	28.3%	8,149	13,726	5,577	22.6%	-20.3%
'45	30,984	8,526	18,042	9,516	30.7%	10,232	17,754	7,522	24.3%	-21.0%
'50	39,141	10,646	22,914	12,268	31.3%	12,795	22,430	9,635	24.6%	-21.5%

주: 보전율=군인보수예산 대비 보전액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군인연금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담 효과

구 분		군인연금 개정효과	공무원연금 개정효과
단 기 효 과	향후 5년간 (‘09~’13년)	평균 -9.2% (1조 7,660억원 → 1조 5,985억원)	평균 -5% (7조 817억원 → 6조 1,858억원)
	향후 10년간 (‘09~’18년)	평균 -12.2% (2조 510억원 → 1조 7,910억원)	평균 -10.2% (9조 7,680억원 → 8조 7,547억원)
장기효과		매년 -13% 이상	매년 -20% 이상

주: 정부 부담효과는 정부가 부담할 '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의 감소 효과를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특수직역 연금 재정전망 결과 분석

- 2009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재정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은 정부재정조전비율이 2010년의 18.6%에서 2050년에는 55%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연금보험료인 상호과는 단기적인 재정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수지균형보험료 수준에는 크게 부족함.
- 사학연금은 2020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달리 적자재정 발생시 보전주체가 정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 군인연금의 경우 퇴역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비교할 때 재정불안 요소가 더 높지만, 가입자수가 일정하고 연금도 성숙기에 이미 도달하여 재정부족분도 명확하게 현시됨.
- 특수직역연금의 연금급여는 사회보장적 연금 성격과 직역연금적 성격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수직역연금은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지급책임이 있는 만큼 재정적자는 전액 정부의 재정부담이 됨.

CONTENTS

1. PROLOGUE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선진국 연금개혁 동향

3.1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3.2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효과 분석

3.3 선진국의 연금 개혁의 시사점

4. 공적연금 개선방향

5. EPILOGUE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OECD 국가의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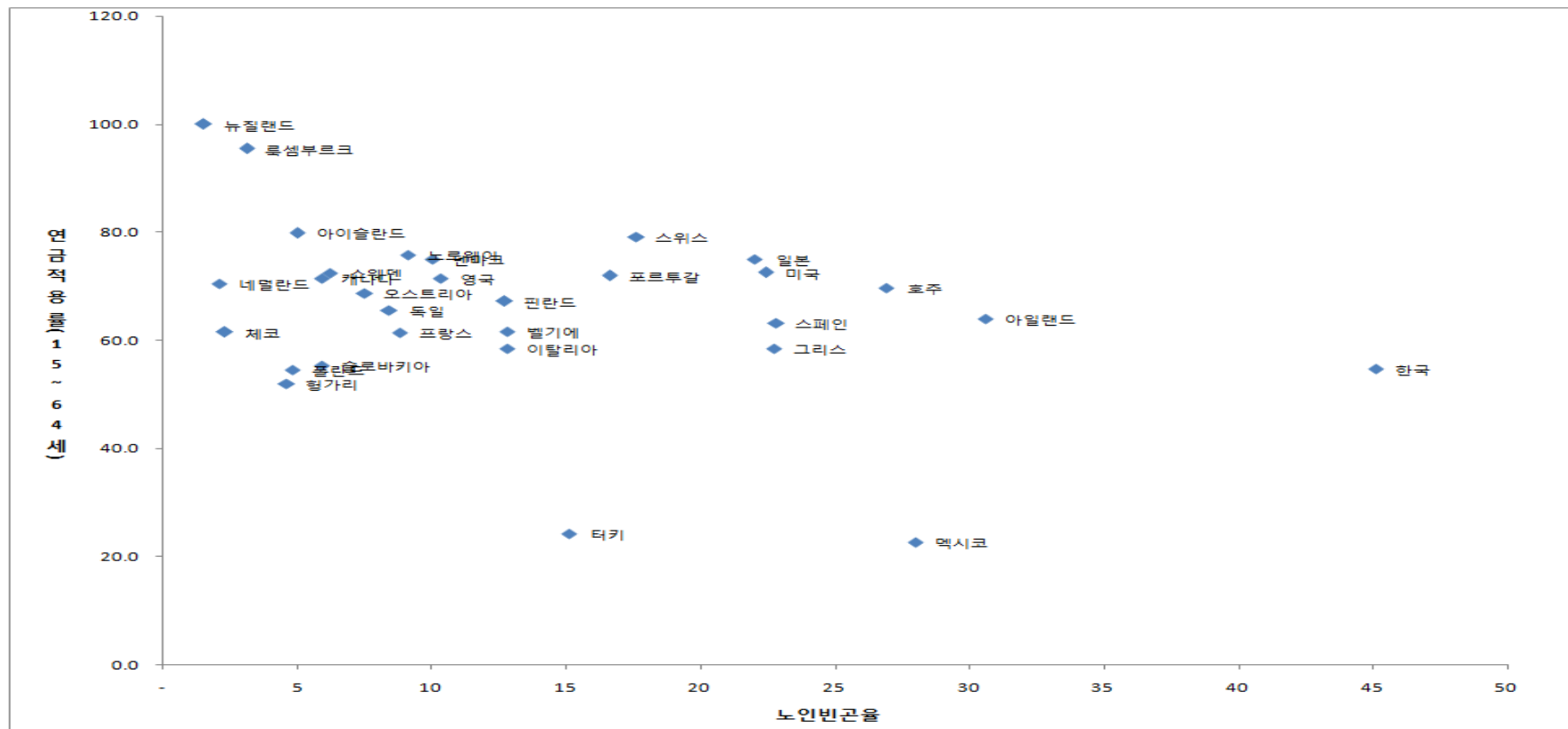
국가	연금제도 종류		국가	연금제도 종류	
	1층	2층		1층	2층
호주	선별적연금	사적 DC형	한국	기초연금	공적 DB형
오스트리아	선별적연금	공적 DB형	룩셈부르크	기초 + 최저연금	공적 DB형
벨기에	최저 크레딧 연금	공적 DB형	멕시코	선별적연금	사적 DC형
캐나다	기초 + 선별적 연금	공적 DB형	네덜란드	기초연금	사적 DB형
체코	기초연금	공적 DB형	뉴질랜드	기초연금	—
덴마크	기초 + 선별적연금	공적 + 사적 DC형	노르웨이	기초 + 선별적연금	공적 포인트
핀란드	선별적 연금	공적 DB형	폴란드	선별적연금	공적 명목계좌 + 사적 DC형
프랑스	선별적 + 최저보증연금	공적 DB형 + 포인트	포르투갈	최저보증연금	공적 DB형
독일	사회부조	공적 포인트	슬로바키아	최저보증연금	공적 포인트
그리스	최저보증연금	공적 DB형	스페인	최저보증연금	공적 DB형
헝가리	—	공적 DB형 + 사적 DC형	스웨덴	선별적연금	공적 명목계좌 + 사적 DB형 + DC형
아이슬란드	선별적연금	사적 DB형	스위스	선별적연금	공적 DB형 + 사적 확정 크레딧
아일랜드	기초연금	—	터키	최저보증연금	공적 DB형
이탈리아	사회부조	공적 명목계좌	영국	기초 + 선별적연금	공적 DB형
일본	기초연금	공적 DB형	미국	선별적연금	공적 DB형

자료: Queisser, M., Whiteford, P. and Whitehouse, E.R. (2007),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in OECD countr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38(6), p. 544.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연금적용율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임. 따라서 연금재정 안정화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가입률의 제고와 현재 노인에게 대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연금적용률과 노인빈곤율



자료: OECD

** 김용하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 18집 2호 발췌 정리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국가군에 속하여 있음.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급여 수준 인하와 같은 정책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이미 한계와 있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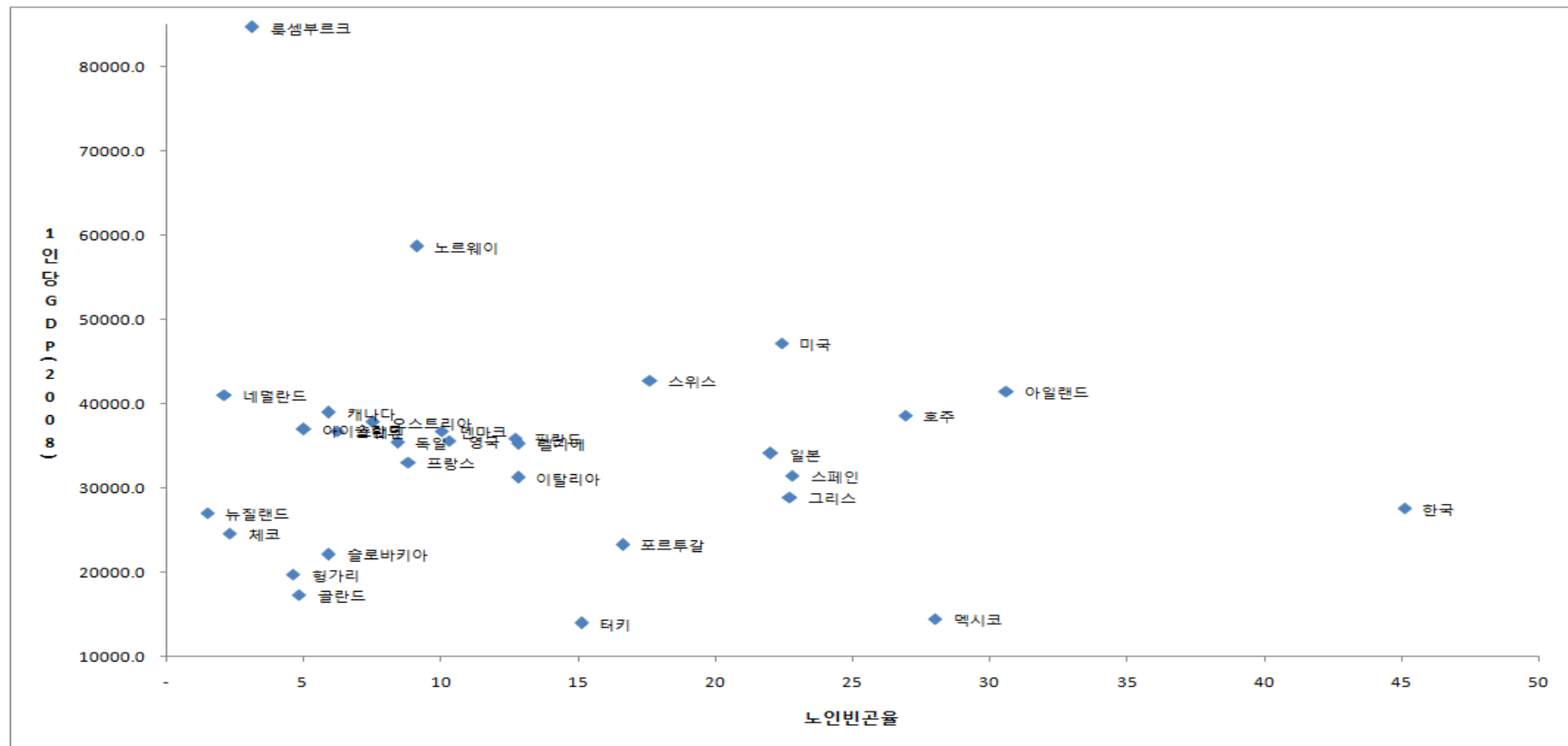


자료: OECD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 한국은 구매력지수로 평가한 1인당 GDP 수준에 비하여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등 있으나 이들 국가군의 노인빈곤율은 30% 내외 수준임.

1인당 GDP와 노인빈곤율



선진국의 연금제도 현황과 전망

- 2007년을 기준으로 2060년의 연금지출부담을 전망한 결과,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의 연금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은 연금지출부담이 감소

각국의 연금재정 지출의 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개시연도 (2007)	종료연도 (2060)	증감 (2007~ 2060)	국가	개시연도 (2007)	종료연도 (2060)	증감 (2007~ 2060)
벨기에	10.0	14.7	4.7	헝가리	10.9	13.8	3.0
불가리아	8.3	11.3	3.0	몰타	7.2	13.4	6.2
체코	7.8	11.0	3.3	네덜란드	6.6	10.5	4.0
덴마크	9.1	9.2	0.1	오스트리아	12.8	13.6	0.9
독일	10.4	12.8	2.3	폴란드	11.6	8.0	-3.5
에스토니아	5.6	4.9	-0.7	포르투갈	11.4	13.4	2.1
아일랜드	4.0	8.6	4.6	루마니아	6.6	14.5	7.9
그리스	11.7	24.1	12.4	슬로베니아	9.9	18.6	8.8
스페인	8.4	15.1	6.7	슬로바키아	6.8	10.2	3.4
프랑스	13.0	14.0	1.0	핀란드	10.0	13.4	3.3
이탈리아	14.0	13.6	-0.4	스웨덴	9.5	9.4	-0.1
키프로스	6.3	17.7	11.4	영국	6.6	9.3	2.7
라트비아	5.4	5.1	-0.4	노르웨이	8.9	13.6	4.7
리투아니아	6.8	11.4	4.6	EU27개국	10.1	12.5	2.3
룩셈부르크	8.7	23.9	15.2	유로지역	11.0	13.8	2.8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The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 (2008-2060)"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효과 분석

- 공적연금 재정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는 GDP 대비 노령연금지출 비율을 두고 설명변수에는 노인인구비율, GDP 대비 공적연금유보금 비율, GDP 대비 사적연금 지출비율,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넣고 OECD국가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
- 분석결과 노인인구비율과 GDP 대비 사적연금 지출비율은 통계적 유의도가 1%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도가 높게 나왔다. GDP 대비 공적연금유보금비율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유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소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온 반면에 소득대체율의 경우 유의도가 매우 낮게 나왔음

정책수단별 연금 재정안정 효과 분석

(단위: GDP 대비 %)

변수명	추정치	t-값	유의도
노인인구비율	0.7622	7.53	<.0001
공적연금유보율	-0.0728	-1.45	0.1636
사적연금지출비율	-0.85167	-3.87	0.001
연금수급개시연령	-0.04318	-1.34	0.1957
소득대체율	0.00672	0.37	0.7191

주: F 값 = 112.01, $R^2 = 0.9672$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효과 분석

- 정책수단별 재정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은 두 개의 식에서 모두 1%의 오차범위 내의 설명력을 보였고, 공적 적립기금을 보유한 경우 오차의 범위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설명력이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였음. DC성격의 연금제도 도입의 경우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사용한 추정식에서만 유의도를 보였고, 연금급여산정기준은 '. 또한 노인인구비율은 두 개의 추정식 모두에서 1% 오차범위내의 높은 유의도를 보였음

정책수단별 재정 안정화효과 분석결과

변수명	GDP 대비 연금지출 (2060)	연금기여 환산율 (2060)
노인인구비율	0.683297*** (11.72308)	1.846724*** (13.23657)
연금급여산정기준	-2.72207 (-1.37606)	-10.9143** (-2.30501)
기대수명과의연계	-1.58335 (-0.75218)	-6.09338 (-1.20932)
물가지수연금연동	2.640238 (1.190566)	10.70637** (2.016942)
수급개시연령상향	-6.24979*** (-3.55616)	-17.8126*** (-4.23432)
DC성격제도도입	-4.69162* (-2.01177)	-7.8815 (-1.4119)
공적연금유보기금	-3.6593* (-1.77711)	-12.9061** (-2.6185)
R ²	0.946	0.956
F	54.423	66.07

선진국의 연금개혁의 시사점

- 1990년대 이후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금 시스템이나 재정방식과 같은 구조적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모수적인 개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수단은 다중적으로 선택됨.
-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노후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특히, 한국과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재정안정성과 함께 연금적용률과 가입기간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함.
- 둘째,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재정방식 측면에서 보면 부과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들이 적립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DC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명목적 DC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 등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음. DB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적립기금을 만들어 유보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DC제도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음. 투자수익률이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이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투자수익률은 이자율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자산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너무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구하여야 함.

선진국의 연금 개혁의 시사점

- 셋째, 모수적인 개혁 역시 재정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연금급여율의 직접적인 하향조정과 함께 연금급여 산정방식의 조정,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물가지수연동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모수적인 개혁이 정책수단으로 조합적으로 선택되고 있음. 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정책은 안정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넷째, 지난 몇 십 년 기간 중 일어났던 모수적 연금개혁들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이러한 개혁들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진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었음. 실제 많은 나라들은 연금 시스템이 시작될 당시에는 한 자리 숫자였던 기여율을 최근 들어 15 혹은 20 퍼센트 까지 올렸음.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급여 삭감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인상은 종속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우선적 정책수단으로 고려되지는 않음.
- 다섯째, 각국의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변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있지만 향후 50년간의 고령화율의 변화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노인인구비율이 증가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작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가 있고, 변화폭이 큰 일본, 한국, 동부유럽, 남부유럽의 국가군이 있음. 각국에서 유사한 정책수단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인구구조의 변화정도에 따라 연금재정의 부담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따라서 미래의 연금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악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CONTENTS

1. PROLOGUE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선진국 연금개혁 동향

4. 공적연금 개선방향

4.1 국민연금의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4.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4.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5. EPILOGUE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해석문제 :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기초연금의 도입은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의 2원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비례 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조화가 되는 것이 원칙임.

새누리의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새누리의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 대통령직 인수위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 재정은 국민연금 재정과 별개로 국고로 조달함.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사실상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

① (국민행복연금 도입)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도입방안 >

국민 연금	현행 유지	
기초 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전체(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예외)
	연금액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원 (A값 10%) 국민연금 수급자 14~20만원 (A값 0~3% 중복 조정)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약4만원 (A값 2%)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원 (A값 0~3% 중복 조정) ※ 부부가구는 상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감액
	시행 시기	'14.7월

※ 중복조정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조정 하한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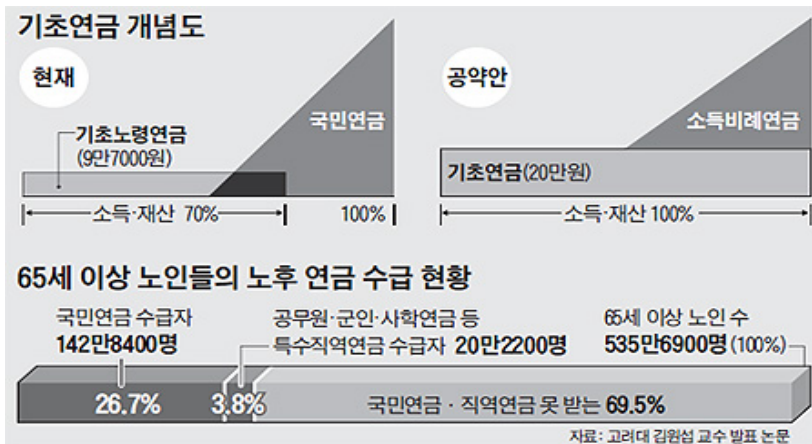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인수위 기초연금 파장

- (1) 국민연금 기금으로 재원일부 조달
- (2)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불지급
- (3)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제도개선의 기본원칙

- (1)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제고
- (2)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구축
- (3) 국민연금제도 안정성 불침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인수위 안**

국민연금 미가입자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소득 상위 30%	기초연금 미지급 원칙. 소액이라도 줄지 검토 중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하위 70%	기존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9만7100원)+ 소득·가입 기간 따라 0~9만7100원 차등 지급
	소득 상위 30%	기존 국민연금+소득·가입 기간 따라 0~9만7100원 차등 지급 ※기초노령연금 해당액(9만7100원) 줄지는 검토 중

※소득 하위 70%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상위 30%는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

- 기초노령연금의 위상이 불안정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함.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국민연금 미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상향조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공감대 형성
- 국민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연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필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와 상위 30%로 나누어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필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조정방법은 소득, 가입기간,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은폐 가능성,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소득자에 불리할 가능성, 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저연금자에게 유리할 가능성 존재 =>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
- 기초연금 급여수준도 일회에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재정부담의 완화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의 부작용 최소화)
- 기초연금 조세로 조달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은 중앙정부로 전환. 기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에 연동.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원조달방안 검토 필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고갈은 불가피함.**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이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고정되어 있고,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연금급여 수준을 4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어, 일차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경제불황에 가계부채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는 쉽지 않음.
-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조정 혹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정책이 발표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 연금보험료 조정시기는 연금급여지출과 연금보험료 수입이 교차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상황, 국민 가계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 역시 정년의 연장 등과 연동할 필요 있음.
- 가장 중요한 연금정책은 노인인구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립기금의 고갈 예상시점인 2060년 이전에 노인인구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인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급여수준 조정 (50%, '08 ⇒ 40%, '28),
보험료 조정(9%, '08 ⇒ 12.9%, '18)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율 (배)	보험료 율	적립기금 (불변가격)	GDP (기본)	적립 기금 /GDP	급여 지출 /GDP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08	248,980	41,486	23,875	17,611	6,384	5,965	35,101	33.5	9.00	194,862	985,304	25.3	0.6
2010	331,124	53,686	30,146	23,541	9,926	9,450	43,760	29.0	9.78	244,276	1,145,006	28.9	0.8
2015	629,046	91,086	51,420	39,666	17,976	17,637	73,110	30.9	11.73	406,181	1,590,977	39.5	1.1
2020	1,109,930	144,824	77,488	67,336	33,496	33,042	111,328	29.8	12.90	636,550	2,179,776	50.9	1.5
2025	1,694,283	185,862	100,297	85,565	58,368	57,779	127,494	26.8	12.90	880,080	2,755,614	61.5	2.1
2030	2,436,043	250,680	127,055	123,625	89,911	89,149	160,770	25.3	12.90	1,146,094	3,483,571	69.9	2.6
2035	3,244,890	303,306	153,960	149,346	134,424	133,456	168,882	22.9	12.90	1,382,721	4,177,520	77.7	3.2
2040	4,103,607	376,902	187,058	189,844	204,121	202,892	172,780	19.3	12.90	1,583,796	5,009,707	81.9	4.0
2045	4,885,948	439,454	222,189	217,265	289,462	287,923	149,992	16.4	12.90	1,707,975	5,864,227	83.3	4.9
2050	5,564,990	514,954	266,483	248,471	388,394	386,466	126,560	14.0	12.90	1,761,961	6,864,506	81.1	5.6
2055	6,002,100	557,985	300,924	257,061	493,358	490,956	64,627	12.0	12.90	1,721,212	7,919,288	75.8	6.2
2058	6,103,444	586,013	323,538	262,475	569,634	566,893	16,379	10.7	12.90	1,649,322	8,628,439	70.7	6.6
2059	6,102,036	594,620	331,819	262,802	596,029	593,164	-1,408	10.2	12.90	1,616,609	8,878,664	68.7	6.7
2060	6,082,568	602,213	339,857	262,356	621,681	618,687	-19,467	9.8	12.90	1,579,855	9,136,145	66.6	6.8
2065	5,619,177	624,318	391,406	232,912	759,234	755,504	-134,916	7.6	12.90	1,321,910	10,437,950	53.8	7.2
2070	4,638,868	647,756	452,891	194,864	884,130	879,481	-236,374	5.5	12.90	988,418	11,925,249	38.9	7.4
2075	3,114,830	657,731	522,828	134,904	1,012,675	1,006,882	-354,944	3.4	12.90	601,121	13,624,471	22.9	7.4

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 단기적으로는 매년도의 연금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보전방식은 국민들의 비판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 부담체제로 전환 필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궁극적인 책임은 사용자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전이든 부담이든 정부부담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 구성과 정부보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연금기금과 연금제도는 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전환 필요
- 따라서 보전제도를 폐지하고 5년 단위의 재정재계산 결과를 기초로 총 균형보험료율을 결정한 후, 기여금과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균형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정부재정부담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궁극적으로는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후생연금 급여수준으로 조정
-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구조적 개편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국민연금수준의 공무원연금 + 퇴직수당의 민간 퇴직연금수준 상향 조정 + 공무원 등 특수직역에 대한 부가적 연금급여 구조가 검토될 수 있음.

EPILOGUE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에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려가 있었고 1999년, 2007년 두 차례의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모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금제도를 받쳐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를 제어하지 못하여 2060년 이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수 있음.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방법과 적절한 수준의 연금보험료 인상 등은 필요하지만 경기회복 속도와 가계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직역연금임. 기초노령연금은 적정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역연금의 제도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제도개선 압력은 복지재정 부담의 증가에 따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제도개선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임.
- 최근의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보면, 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정책이 안정화 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연금정책 세미나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2013. 3. 22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kiri



Contents

I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3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10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16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37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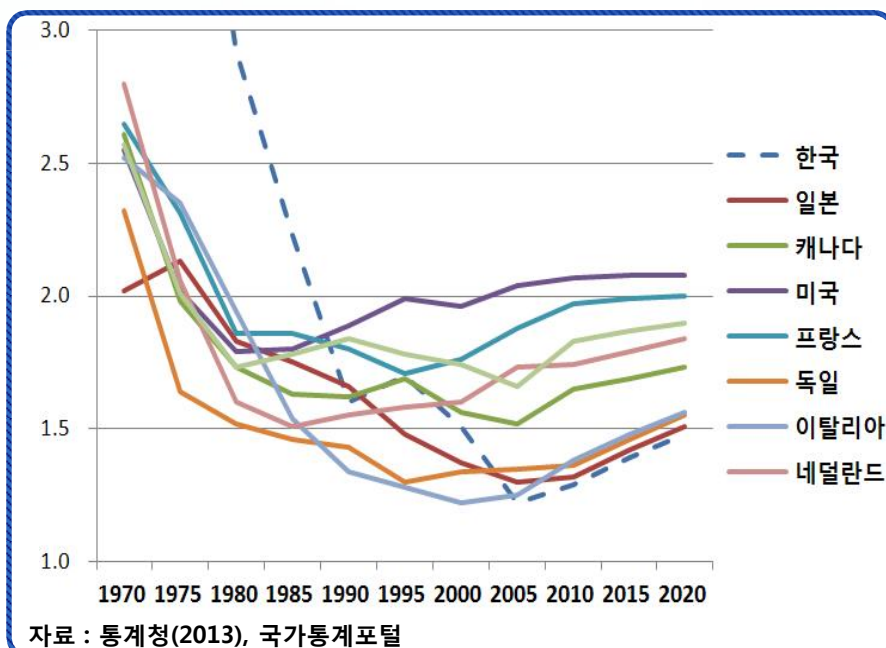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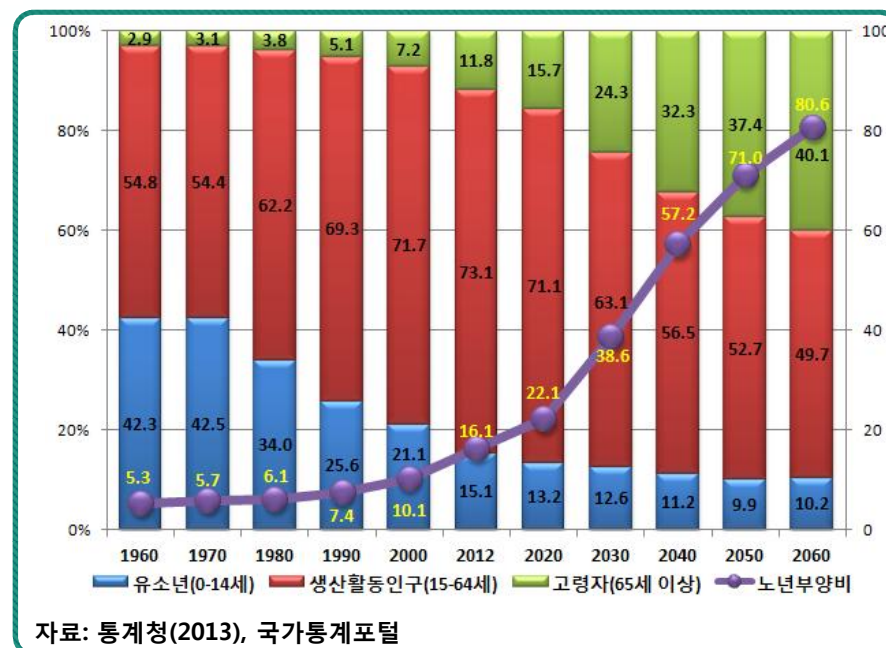
■ 저출산 · 고령화 심화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 2012년 합계출산율 1.30명
- 노년부양비 : 2012년 16.1%에서 2060년 80.6%로 급속히 증가 예상

합계출산율 전망 (OECD 주요국)



생산활동 인구와 노년부양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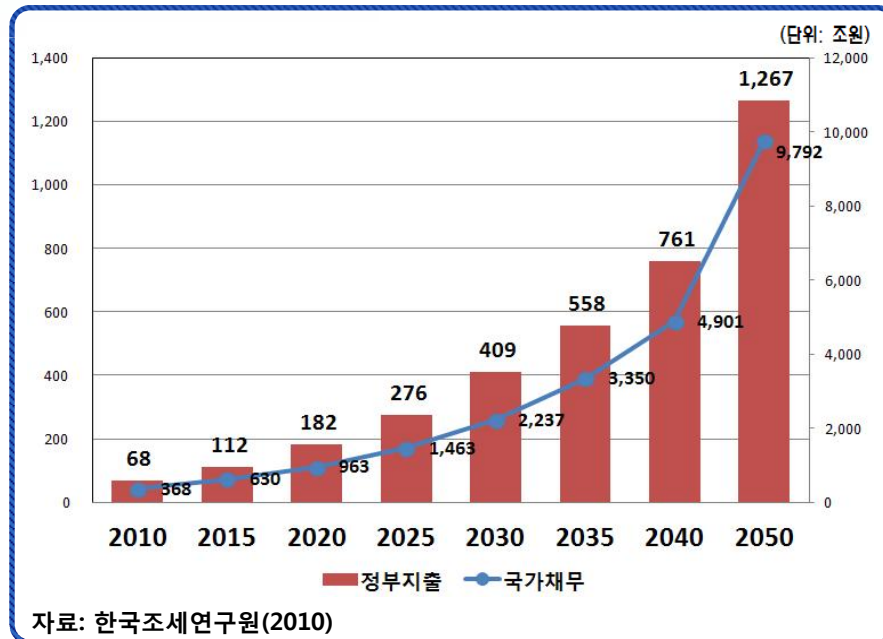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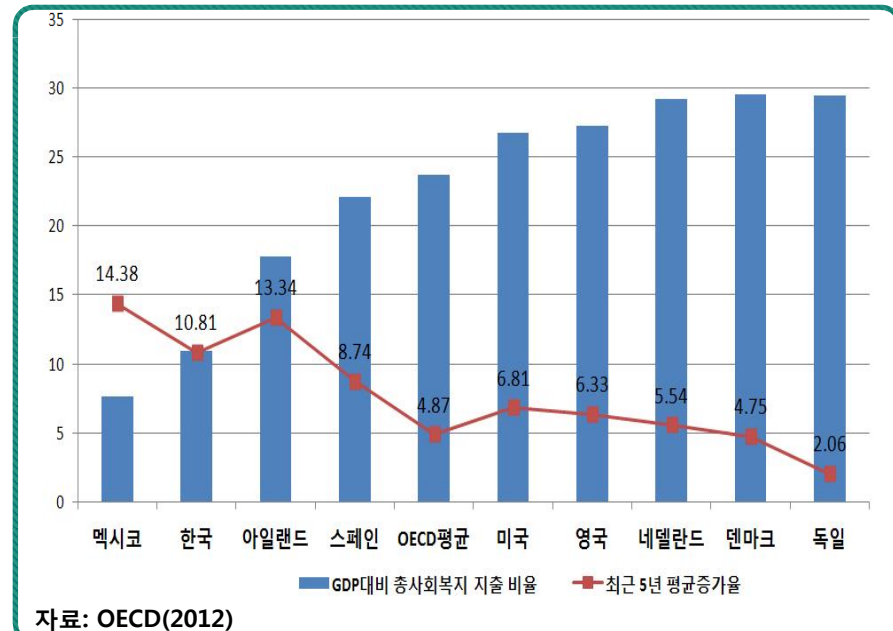
■ 복지지출 증가

- 정부지출 : 2013년 97.4조원에서 2050년 1,267조원으로 증대 예상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 멕시코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
 - ▶ OECD 평균증가율 (4.9%)의 2.2배

정부지출 전망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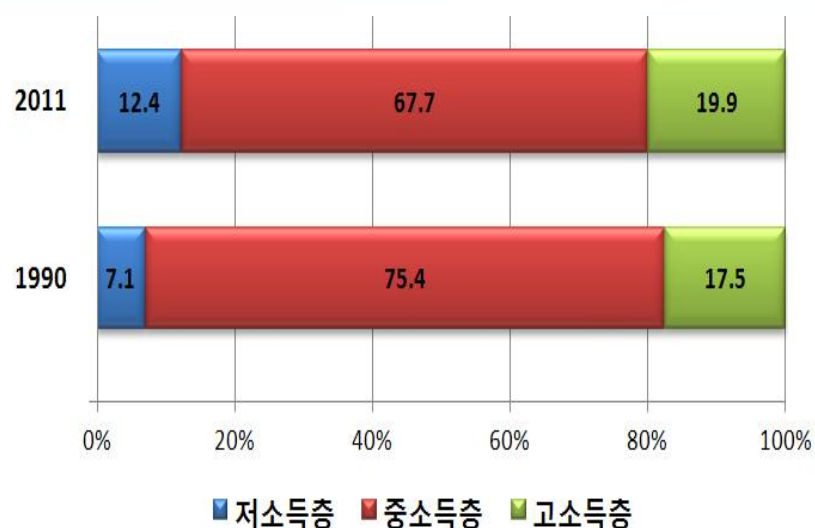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 소득 양극화 심화

- 저소득계층 : 1990년 7.1%에서 2011년 12.4%로 증가
- 소득분위별 노후준비 : 저소득계층(1분위)의 경우 단지 33.1%만 노후준비

소득계층별 비중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털

소득분위별 노후준비 실태

(단위 : %, 가구)

구분	노후준비 하고 있음	노후준비 하고 있지 않음
1분위	33.1	66.9
2분위	57.1	42.9
3분위	78.5	21.5
4분위	88.9	11.1
5분위	94.9	5.1
전체 (N)	70.4 (2,131)	29.6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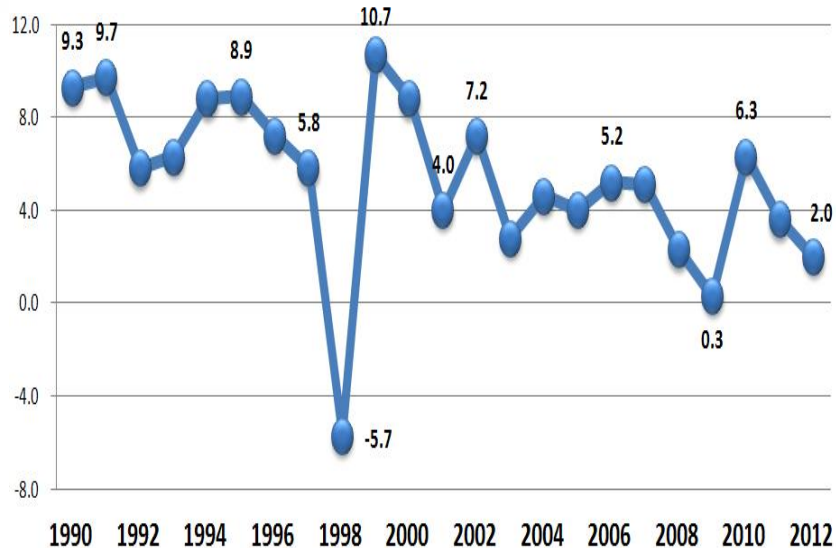
자료 : 윤석명 외 (2011)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 저성장 · 저금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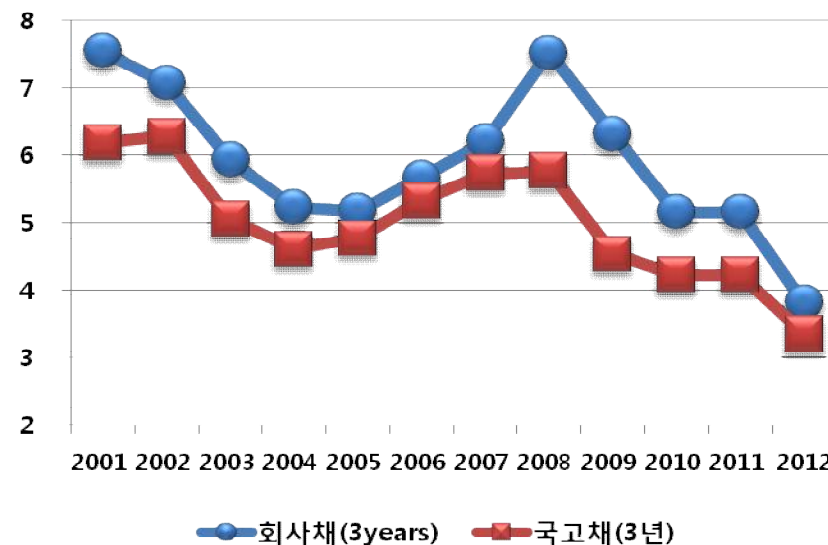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금리 하향 안정화, 경제성장을 저하
- ▶ 저축 · 투자 감소, 고용창출 미흡 등으로 저축 및 연금 가입 저하 예상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2012), 국가통계포털

금리 추이[%]



자료 : 통계청(2012), 국가통계포털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 공적 연금 재정악화

- 국민연금은 2044년 수지적자, 2060년 적립기금 소진 예상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수지적자 심각, 사학연금도 2033년 적립기금 고갈예상

공적 연금의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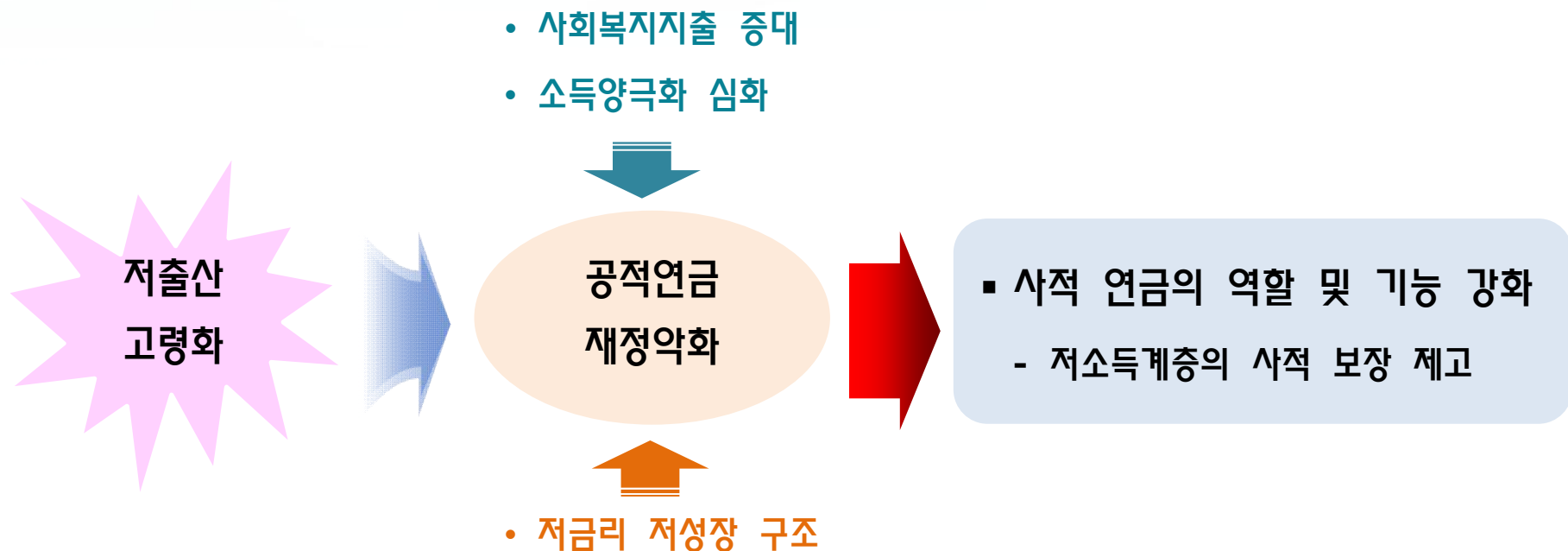
		수지적자	기금소진
국민연금		2044년 : -5.4조원	2060년 : 적립기금 -214.2조원
특수 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1993년부터 정부보전금으로 충당 : 2013년 1.9조 → 2020년 6.3조	
	군인연금	1973년부터 정부보전금으로 충당 : 2013년 1.4조 → 2020년 2.2조	
	사학연금	2021년 : -25억원	2033년 : 적립기금 0원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국회예산정책처(2013), 사학연금재정재계산(2010)

I. 소득복지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 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사적 연금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지출심화, 소득양극화와 저금리 · 저성장 구조 등 사회복지환경 급변
 - ▶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적 보장대책 절실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 외형적인 사적 연금 성장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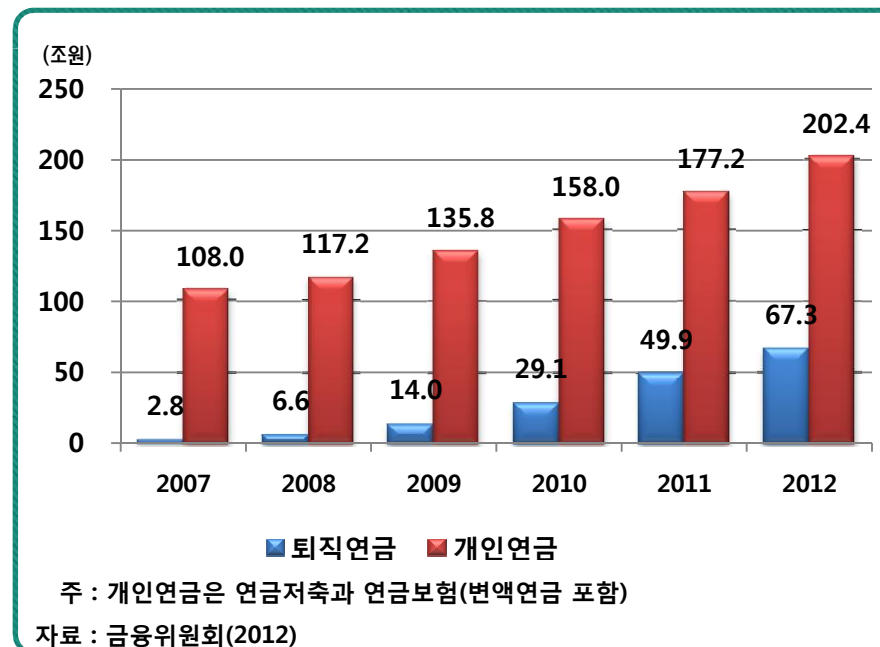
● 적립금 규모 : 2007년 110.8조에서 2012년 약 270조원으로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약 67조원, 개인연금적립금 규모 약 202조원

사적 연금의 적립금 규모 및 성장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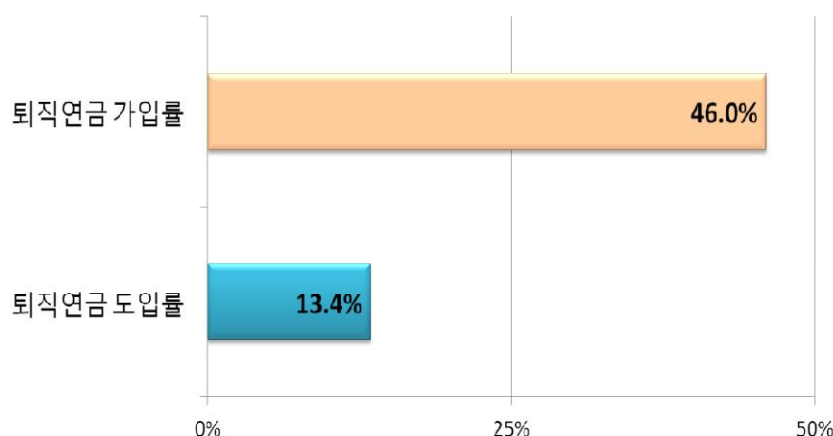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 선진국 대비 사적 연금 가입 미흡

- 퇴직연금 도입률(전사업장대비) 13.4%에 불과 : 퇴직연금 가입률은 46.0%
 - ▶ 호주 퇴직연금 가입률 95% (2011년 적립금 규모 1.3조 호주 달러)
- 개인연금 가입률 :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 (2008년 31.8% → 2012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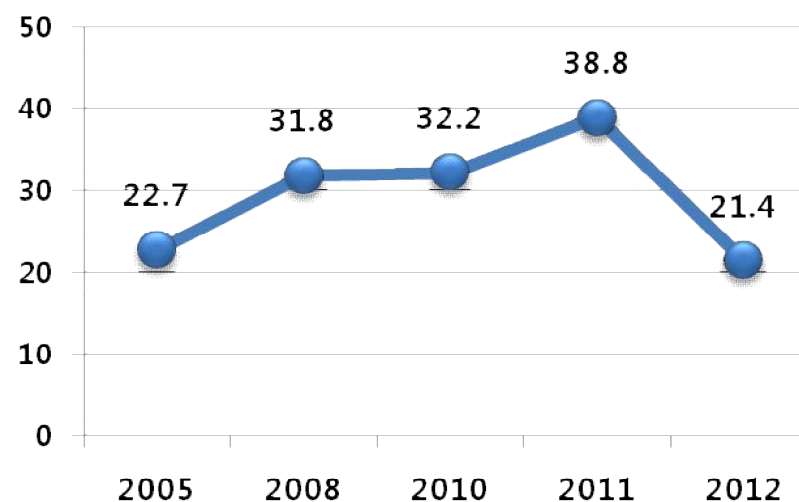
퇴직연금 가입자 수



주: 1) 퇴직연금 도입률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 / 전체사업장 수
 2) 퇴직연금 가입률 = 가입자 수 / 전체 상용근로자 수

자료 : 고용노동부(2013)

개인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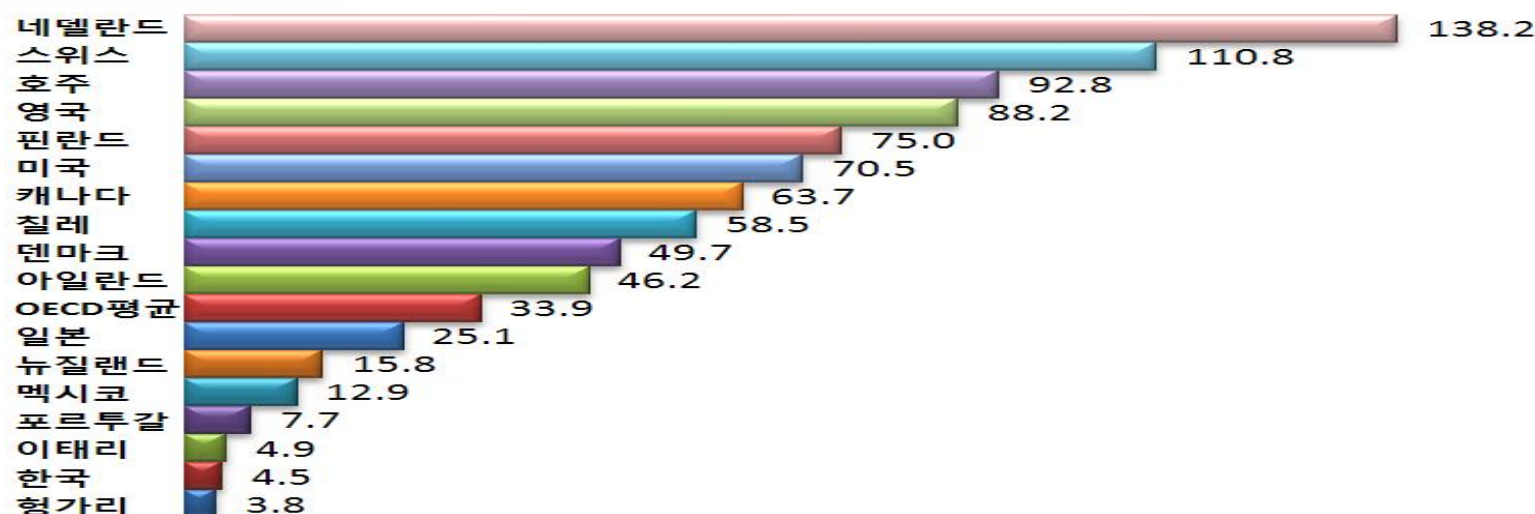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각 연도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 사적 연금 역할 : 사적 연금의 경제적 기능 미흡

- GDP 대비 사적 연금의 자산비중 : OECD 평균 33.9%
- 2012년 기준 GDP 대비 사적 연금 자산비중은 4.5%에 불과

GDP 대비 사적 연금 자산비중 (%)



주 : 사적 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자료: OECD(2012) Pension Markets in Focus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 사적 연금 역할 : 노후보장적 기능 취약

-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0% : 우리나라 21.2%에 불과
- ▶ 국제기구 등의 권고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40%)과 비교 시 18.8% 차이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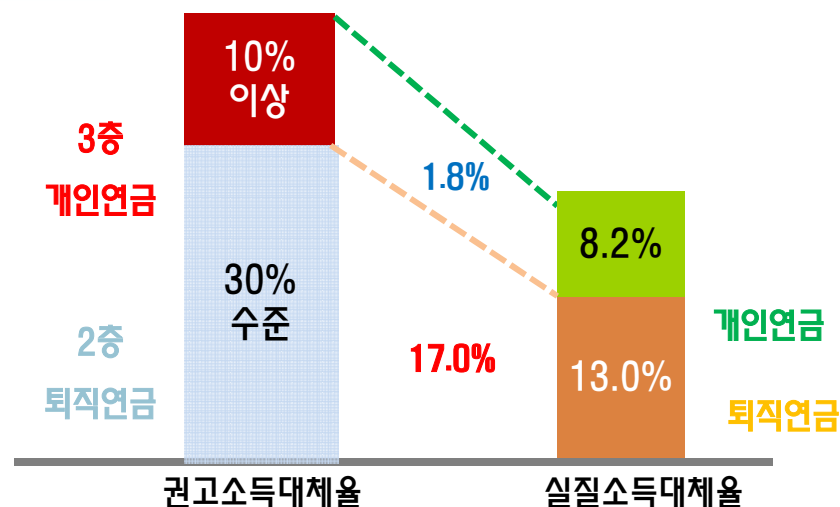
가입기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년	10.5% (4.5%)	13.4% (5.8%)	17.1% (7.5%)
25년	12.3% (5.1%)	16.2% (6.7%)	21.2% (7.5%)
30년	14.0% (5.5%)	18.8% (7.5%)	25.2% (10.2%)
35년	15.4% (5.8%)	21.2% (8.2%)	29.2% (11.4%)

주 : 1) 괄호 안은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2) 시나리오1=실제수익률, 시나리오2=실제수익률+1%,

시나리오3=실제수익률+2%

3) 연금수익률은 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적용함.



주 : 1) 사적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시나리오 2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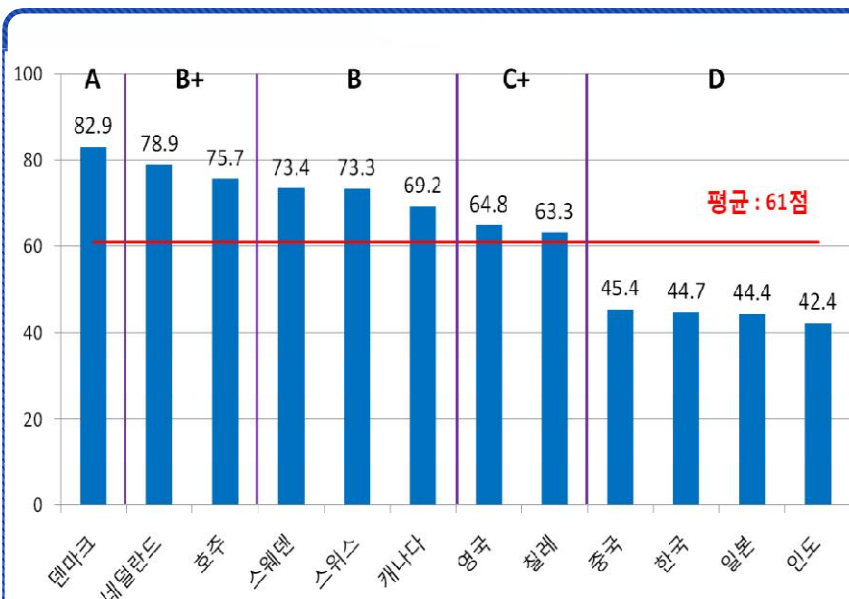
II.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 사적 연금 위상 : OECD 18개국 중 16위 (D학점)

● 글로벌 사적 연금평가 : 사적 연금제도 수준은 D등급에 불과

▶ 사적 연금과 관련된 가입률, 연금수령, 수급권보호 등에서 낮은 점수

글로벌 사적 연금제도 평가



자료 : 호주금융연구센터(2012), 이상우(2012)

연금평가 하위점수 항목

우리나라의 문제 항목	점수
연금자산의 실적배당상품 투자여부	3.4
사적 연금 가입률	3.0
연금가입자 기여금액의 수준	3.8
사적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여부	0
사적 연금의 적절한 규제감독 여부	4.4
사업자의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보유 적정성	0
사적 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기능 여부	0
사적 연금 사업자 파산 시 수급권 보호 여부	0

주 : 10점 만점 기준임.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가입자 보호 및 참여문제

- 제도에 대한 가입자 신뢰 저하
- 운용체계 및 지배구조, 가입자 교육 등에 기인

사적 연금 취약계층 문제

- 사적 연금 사각지대 형성
- 취약계층의 사적 연금 혜택 소외

연금전환 문제

- 일시금 수령으로 연금재원 손실
- 안정적인 노후보장 미흡

퇴직급여 이원화 문제

- 퇴직연금제도로의 가입 미흡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와해 우려

공사연금 연계 문제

- 고령화 리스크 등 환경변화 적기대응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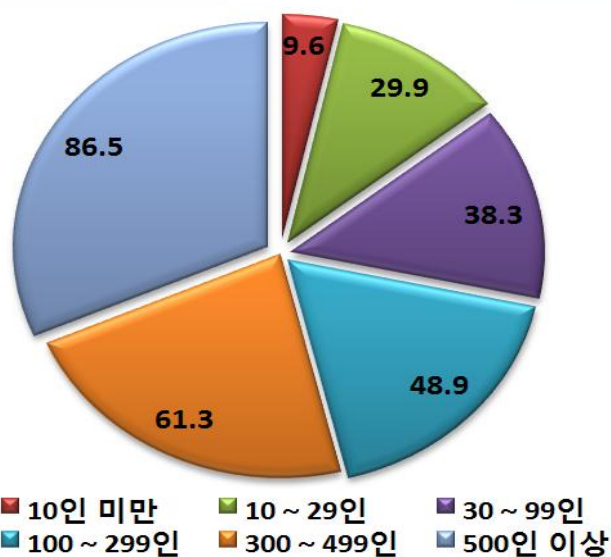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취약계층 문제 : 사적 연금 혜택 소외 (사각지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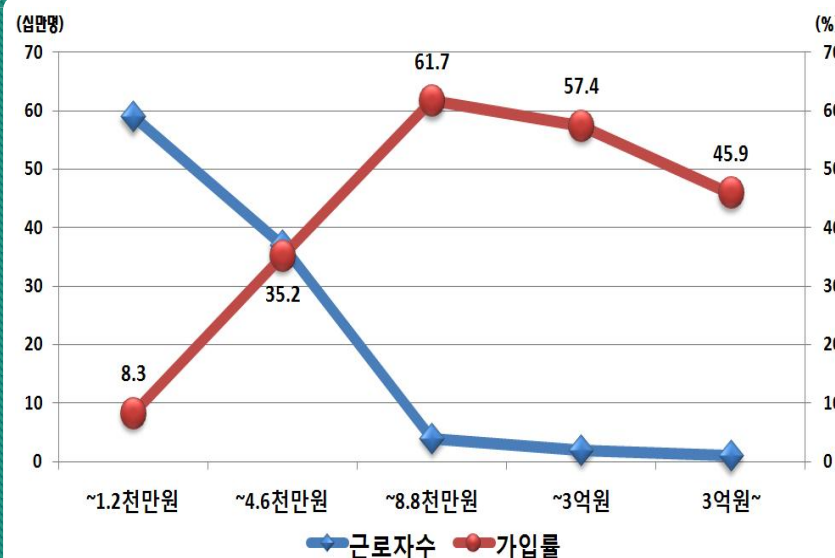
- 사적 연금 사각지대 :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저소득 베이비부머
- ▶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 계층 사적 연금 가입 저조 → 사회적 이슈 대두 예상
- ▶ 1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9.6%, 1,200만원 이하 계층 개인연금 가입률은 8.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 고용노동부(201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



자료 : 국세청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비 정규직 임금 근로자 : 전체 임금근로자의 33%
 -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1주 15시간 단기간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가입 불허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베이비부머
 - ▶ 퇴직급여제도 도입의무화 (2010년) : 사용자의 경제적부담 가중(임금)등으로 제도가입 회피
 - ▶ 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대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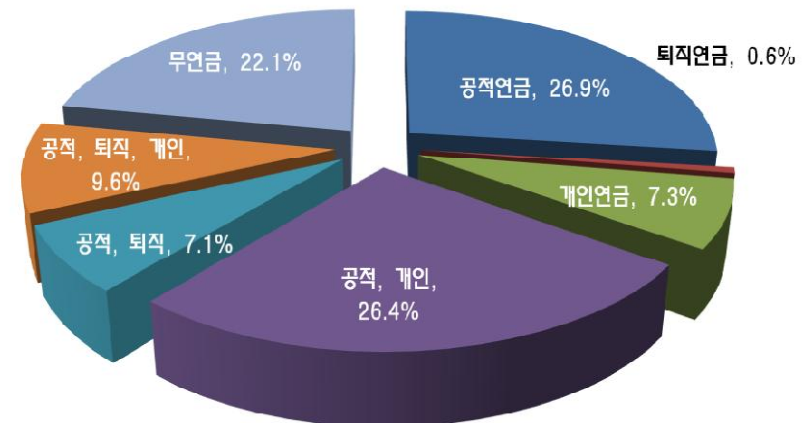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단위 : 천명, %)

	08.8	09.8	10.8	11.8	12.8
임금근로자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정규직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비정규직	5,445	5,754	5,685	5,995	5,911
비정규직 비중	33.8	34.9	33.3	34.2	33.3

자료 :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베이비부머 연금가입률



자료 : 정경희 외(2011)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참고 :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리스터 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독일)

(단위 : 유로)

	02.3	04.5	06.7	08 이후
기본보조금 한도액 (1인당)	38	76	114	154
자녀보조금 한도액 (자녀 1인당)	46	92	138	185
보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여율 (연간소득 기준)	1%	2%	3%	4%
정부보조를 위한 최대기여금	525	1,050	1,575	2,100
소득공제액	525	1,050	1,575	2,100

(단위 : 유로)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 세금예택	지원금 비중(%)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주: 두 자녀를 가진 부부인 경우임

중 · 장년층 퇴직연금 추가기여 (미국, 호주)

구분	법개정 이전 (2001년)	법개정 이후 (2002년)	2011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한도 확대	10,500달러	2002년 1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16,500달러
50세 이상 근로자 추가기여 허용	없음	2002년 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5,5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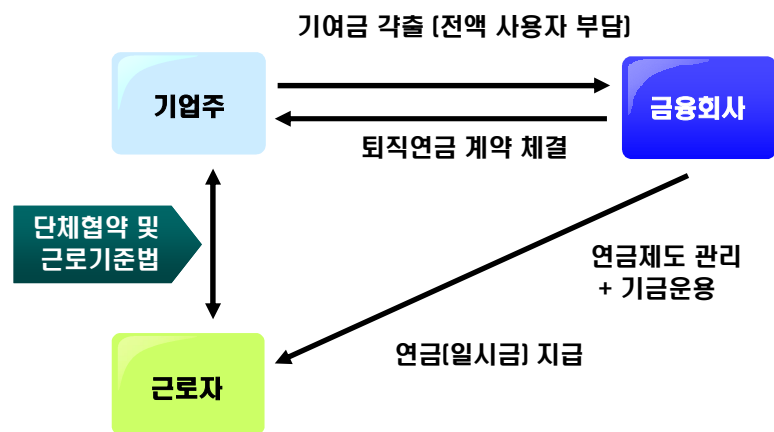
	2011년 현재	2012년 이후
50세 이상	50,000 호주달러	50,000 호주달러
기타 근로자	25,000 호주달러	25,000 호주달러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가입자보호 및 제도참여 문제 : 운용체계 및 지배구조 측면

- 근로자위주의 제도도입은 4.6%에 불과
- 운용체계 문제 : 연금사업자 위주로 제도 운영 → 근로자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증대
 - ▶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기능장치 부재, 연금사업자의 권한은 큰 반면 책임저조
 - ▶ 자행예금허용, 연금사업자 선정기준부재 등:원리금 보장형 중심(93%) 운영→사후관리서비스제공 미흡
- 지배구조문제 : 현행체계 내에서 가입자가 실질적 제도 운용에 참여하는 장치 부재
 - ▶ 근로자 참여관련 규정(운용방법선정위원회 등)자체 부재 vs 단일 계약형만 운용 등에 기인

계약형 지배구조 (우리나라)



퇴직연금도입의 주도 형태

구 분	비율	주도 형태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11.7%	사용자 주도 58.0%
사용자가 주도한 편	46.3%	
노사가 대등하게	37.3%	노사주도 37.3%
근로자가 주도한 편	3.9%	근로자주도 4.6%
전적으로 근로자에 의해	1.3%	

주: 퇴직연금 도입기업 300개 기업 대상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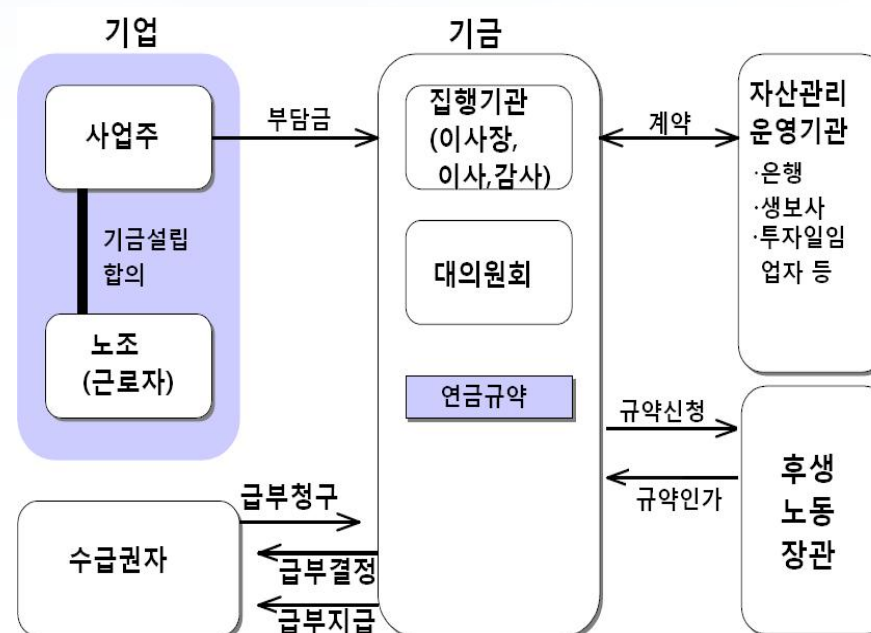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참고 :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

계약형 운용체계 비교 (한국과 일본)

구분	한국	일본
퇴직 자산관리	신탁계약 이해상충 (자행예금 허용) 및 통합운용으로 도덕적 해이 노출가능성	신탁계약 기본원리 충실, 사후관리서비스 철저
수탁자책임 및 권한	사용자권한과 책임과의 불균형, 연금사업자규제의 미흡	수탁자 책임 및 권한 엄격
감시 모니터링	제3자적 감시기능 미작동	연금계리사 등의 역할강화
시장 작동기능	공시, 보고 등 감시 체계 미흡	공시 및 보고체계 정형화

기금형 운용 (일본)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가입자보호 및 제도참여 문제 : 가입자 교육 및 공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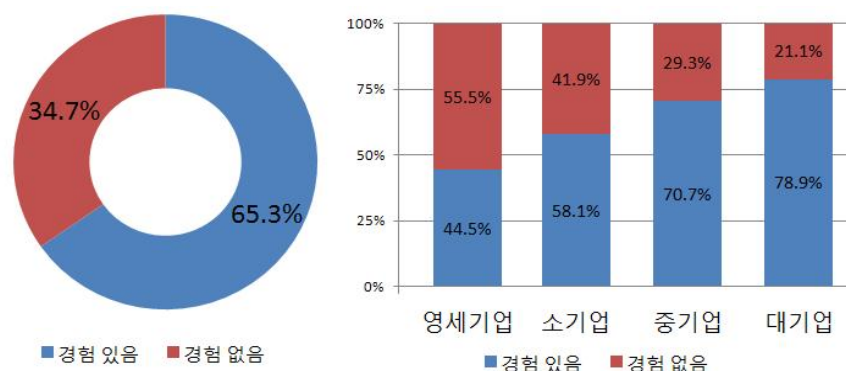
형식적 가입자 교육 및 공시 → 가입자 신뢰저하

- ▶ 가입자 교육 문제 : 근로자의 35%는 가입자 교육 경험이 전무한 상태, 교육 만족도 60% 수준에 불과
- ▶ 교육내용이 퇴직연금 한정 : 연금제도 중요성 인지부족, 교육가이드라인(지침) 부재 : 형식적 교육일관

공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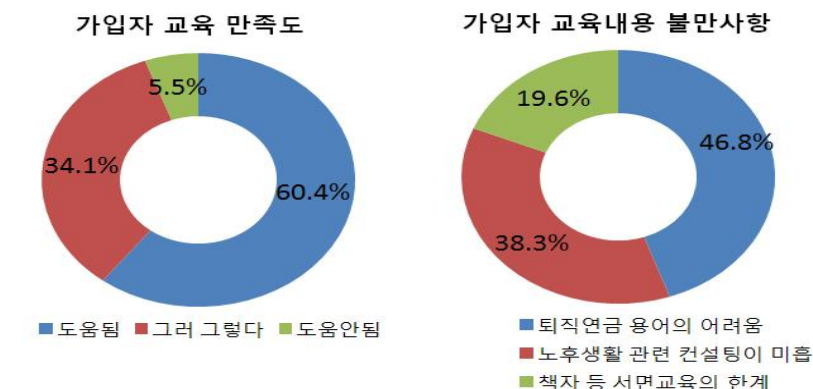
- ▶ 단기수익률 위주 공시로 장기 운용성과 평가 곤란, 수익률과 수수료의 비교공시 미흡
- ▶ 포트폴리오 전체수익률 공시 부재, 운용상품 유형별(주식, 채권 등) 및 규모별 공시 부재

가입자교육 경험 유무



자료: 금융감독원(2012, n=1088)

가입자 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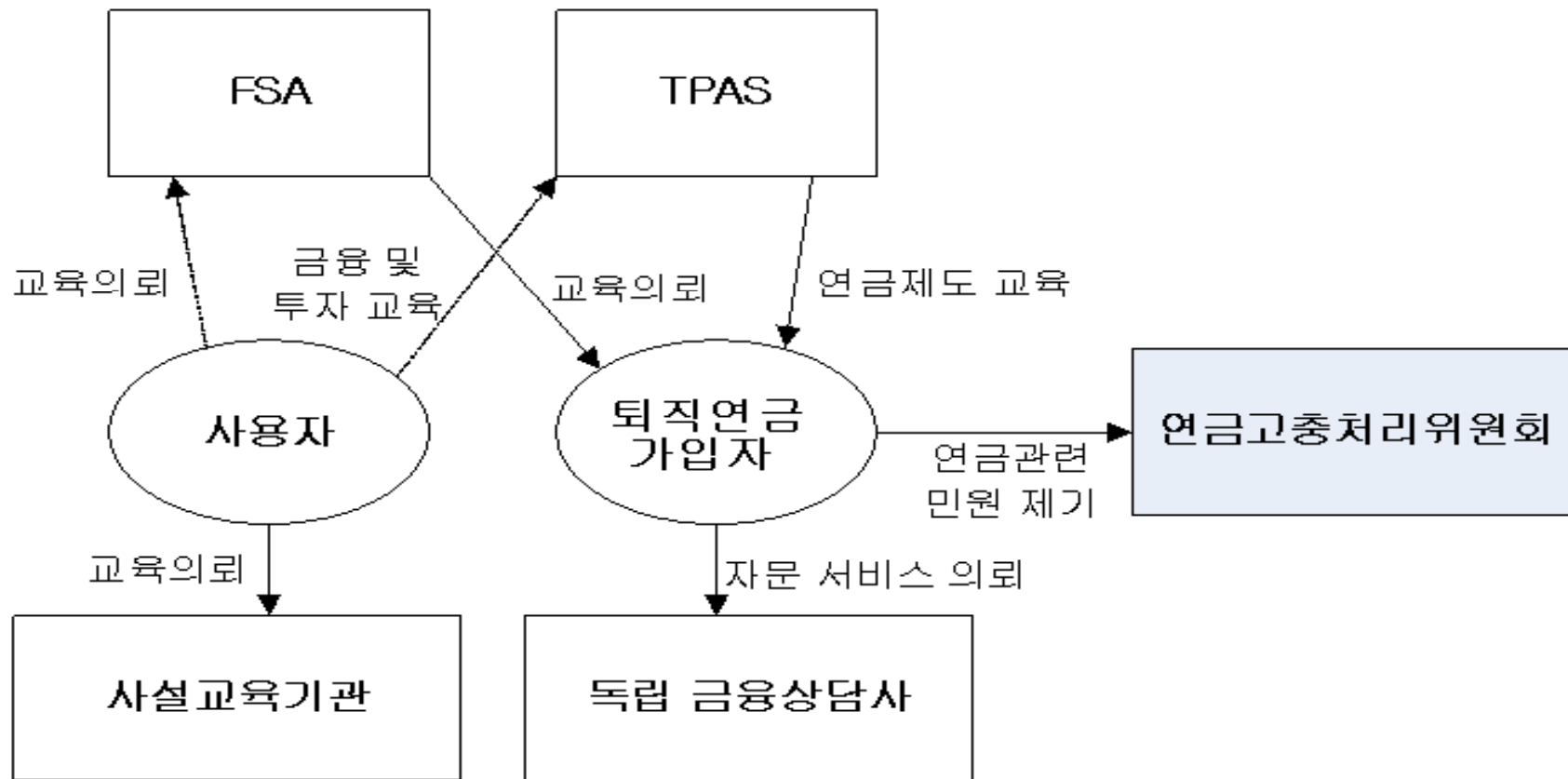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n=350)

자료: 금융감독원(2012, n=1088)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참고 : 영국의 가입자 교육체계



주: TPAS는 The Pension Advisory Service의 약어임.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퇴직급여 이원화 문제

- **현행 퇴직급여제도 :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 ▶ **법정퇴직금 선호도 → 퇴직 일시금 선호 → 연금재원 손실**
 - ▶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 퇴직연금보다 높은 수준(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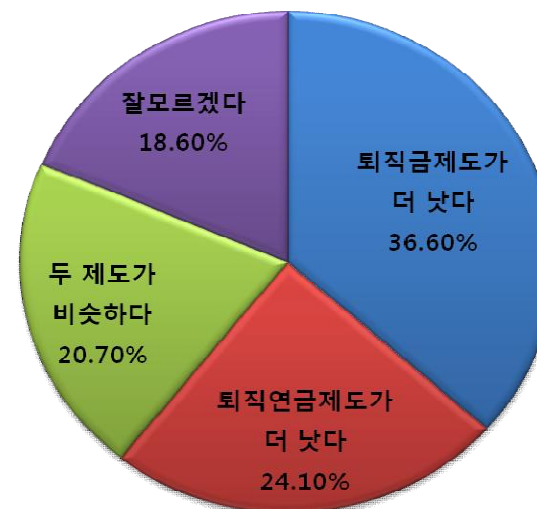
제도정착 장애 및 지연요인

(단위: %)

장애요인	응답비율	지연요인	응답비율
기업인식부족	25.3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만족도가 높아서	32.0
근로자 노후대비 인식부족	24.7	다른 기업의 가입상황을 보고 차후에 가입	22.2
퇴직연금 이해 어려움	21.3	경영자의 무관심	13.2
퇴직연금 수급권보장 미흡	18.0	비용부담으로 인한 회사의 의도적 지연	11.5
가입이 강제가 아니므로	12.0	세제혜택이 확대된 이후 가입	4.1

자료 : 보험연구원(2010)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선호도



주 : n=350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1)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가입의무화 부재 : 가입자 선택권 우선

▶ 퇴직연금 : 원칙적 임의가입형태(단, 신설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규정 신설)

사적 연금 가입의무화

퇴직연금	개인연금
•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형태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개정된 근퇴법 제5조 • 4인 이하 사업장 -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선택 의무화 (2010년 이후)	가입 의무화 규정 없음

사적 연금제도 의무화 국가 (1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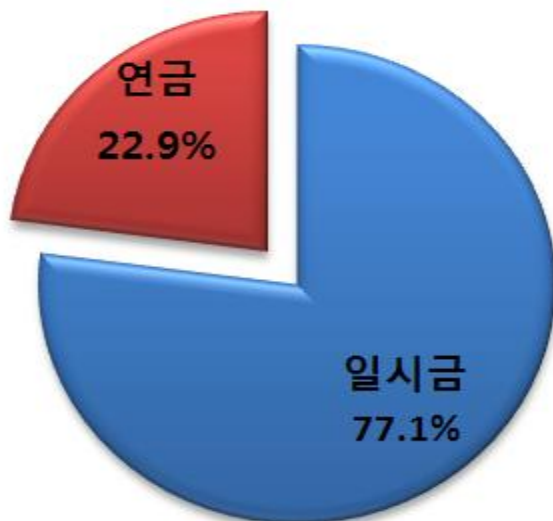
구분	국가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10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주 (1개국)	멕시코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전환 문제

- 55세 이상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 수령 : 퇴직연금제도 도입 목적과 상충
 - ▶ 퇴직연금 수령 시 선호형태 : 대부분 일시금 선호 (77.1%)
 - ▶ 2012년 기준 : 일시금수급자는 97.9%, 연금수급자는 2.1%에 불과

퇴직연금 수령시 선호 형태



자료 : 금융감독원(2012)

퇴직연금 수령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2012)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전환 문제(1): 연금 세제 혜택 미흡

● 입구관련 세제 : 연금가입 유인효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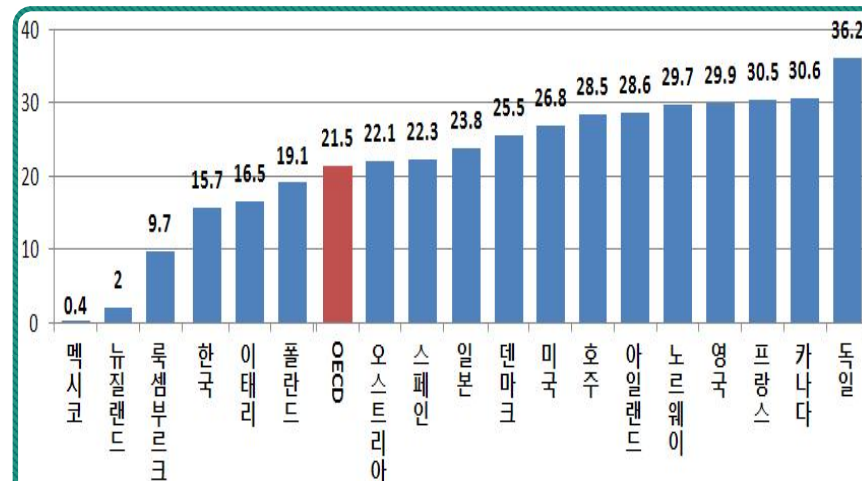
-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방식 (400만원) : 개인연금 위주로 연금가입(퇴직연금가입 부재)
- ▶ 동일한 소득공제 방식 (소득계층 미구분) :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 집중
- ▶ 세제지원 수준 : OECD 34개국 중 23위 : 영국 78,500달러 (9천만원), 미국 16,500달러(1천9백만원) 소득공제

입구관련 세제혜택 (400만원 기준)

과세표준	~ 1.2천만원	~ 4.6천만원	~ 8.8천만원	~ 3억원	3억원 ~
소득세율	6%	15%	24%	35%	38%
세제혜택	최대 24만원	최대 60만원	최대 96만원	최대 140만원	최대 152만원

주: 주민세 제외
자료: 재정기획부(2012)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



주: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자료: 재정기획부(2010)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전환 문제(1): 연금 세제 혜택 미흡

● 출구관련 세제 : 연금수령효과 미미

- ▶ 2012년에 연금소득세제 지원 강화 vs. 퇴직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
- ▶ 세제 개편으로 연금선호도 증가 예상 : 기대효과 미미
- ▶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근속기간 15년, 연금수령기간 15년 가정 : 연금수령시 단지 58만원 유리

출구관련 세제개편 (2012년)

구분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 적용대상 : 공적 + 사적연금 • 한도 : 연간 600만원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한도 : 연간 1,200만원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 사적연금 : 5%	• 사적연금 차등적용 ① 일반 : 5% ② 종신형 70세 이후 : 4%. ③ 퇴직소득 80세 이후 : 3%
	연금 납입 및 수령 요건개선	• 연금저축 납입요건 (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연금저축 수령요건 (수령개시) 55세 이후 (수령기간) 5년 이상	•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연금저축 수령요건 강화 (수령개시) 현행유지 (수령기간) 15년 이상 (수령한도)
퇴직소득 과세 정상화	퇴직소득에 대한 세 부담 조정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① <연부> 과세표준/근속연수 ② ①×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근속연수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② ①×기본세율(6~38%) ③ (②/5)×근속연수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전환 문제(2) : 연금수령 비강제 및 수령기준 엄격

- 사적 연금제도의 지급방식 : 일시금 또는 연금 자율선택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일시금 또는 5년 이상의 연금수령 (10년 이상 가입시 가능)
 - ▶ 영국은 25% 일시금(비과세), 75%는 연금전환 의무화 → 강제성 부여

사적 연금의 연금지급 방식

퇴직연금	개인연금
• 연금지급의 강제화(의무화) 규정 부재 - 완전연금 또는 부분연금화 등 •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연금수령기준 : 매우 엄격(10년 이상 가입) • 연금방식 다양화 관련 규정부재 : 디폴트옵션 등	의무화 관련 규정 없음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연금전환 문제(3) : 연금제도 간 통산기능 취약

퇴직적립금 등 은퇴자산의 이전(통산) 기능 미흡

- ▶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적립금만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 의무화
- ▶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 : IRP로 이전 의무화 규정 부재 → 연금재원 소실우려
- ▶ IRP이전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55세 이후 퇴직자: 일시금 수령), IRP가입 후 중도해지 가능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참고 :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개정된 근퇴법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
제17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 법 제17조 제4항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 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7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담보대출)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 ① 법제7조제2항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시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시
제8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시 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전환 문제(4) : 연금지급보장기능 취약

● 협의의 연금지급보장제도만 존재

- ▶ 확정 급여형 : 3년 이상 장기근로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에는 한계
- ▶ 부분적인 적립(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 적립) : 최대 40%의 미적립채무 발생
- ▶ 확정 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의 수준 미흡

연금지급의 보장장치 현황

구 분	보장범위	적용대상	특징	관련법
퇴직급여 우선변제 제도	최근3년 분에 한정	퇴직급여 대상	사업주 재산 이 있을 시 지급	근퇴법 제 12조
임금채권 보장기금 제도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임금·휴 업수당 및 퇴직금	지급보증 제도 일부 기능	임금채권 보장법 제 8조
예금자 보호제도	5,000만원	DC형/IRA	-	예금자 보호법

연금지급의 보장장치 문제점

구 분		제반 문제
사전적 수급권 보호	최소적립 수준	최대 40%의 미적립채무 발생
	적기시정조치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괴리
사후적 수급권 보호	채권자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실질적 수급권 보호에 한계
	예금자보호제도	정기성 특성 미반영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참고 : 주요국의 연금전환 제도적 장치

연금지급 보장장치 (OECD 국가)

운용주체	정부기관	민간기구
해당국가	미국, 영국 등	독일, 스웨덴 등
운영방식	인수방식(Take-over)	구매방식(Buy-out)
지급보장	국가가 직접보장	민영보험으로 해결 (최종 책임은 국가)

연금제도 통상장치 (미국)

	우리나라	미국
통산장치 문제	55세 이전 자동가입 - 퇴직연금 급여자 한정 - 중도해지 및 퇴직일시금 허용	59.5세 이전 인출시 10% 해지수수료 부과 70.5세 까지 인출 불허 - DC 및 DB로 부터의 자연스런 Roll-Over
특징	퇴직연금 유연성 미흡	퇴직연금 유연성 강화 (IRA시장 전체 40%)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연금세계 차별화 (미국, 일본 등)

구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세제 방식	연령별	직업별
미국	분리방식 (세제 이원화)	○ (저연령, 고연령)	○
일본		△ (검토 중)	○ (근로자, 자영업자)

☞ 연금전환 사례 (칠레 등)

구분		일시금 허용		연금지급기간		프로그램 허용
		전부	부분	확정기간	종신	
의무전환	칠레	△	×	×	○	○
	영국	△	○	×	○	○
디폴트 연금전환	스위스	○	○	×	○	×
	미국 DB형				○	
자발적 선택 일임	미국 DC형	규제 없음				

자료 : 이경희(2010)

III.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공사연금 연계 문제

● 연금제도의 소득보장수준 및 제도간 역할 부재

- ▶ 특정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도입 : 서로 연계되어 효율적 보장시스템으로 운용되는데 한계
 - 국민연금: 올림픽개최와 맞물려 선진국 인식제고수단, 개인연금: 저축수단, 퇴직연금: 노사갈등 해소수단
- ▶ OECD 주요국의 최근 공사연금 역할분담(4개 방향) :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유지
 - 공적연금역할은 감소하되 취약계층 소득보장(최저보증연금, 저소득층 보조 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공사연금 간의 역할 분담 (외국)

구분	공적연금		
	대체(substitutive)		보완 (add-on)
	완전대체	부분대체	
사적 연금	I: 완전민영화 칠레(1981), 멕시코 (1997) 등	II: 부분민영화 스웨덴(1999), 헝가 리, 폴란드, 슬로바키 아 등	V: 법정화 또는 단체협약 호주(1993), 스위스(1985),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 란드(1974), 스웨덴, 뉴질 랜드(2007) 등
	III: contract-out 영국(1975 등) 페루(1993), 콜롬비 아(1994), 아르헨티 나(1994)	IV: contract-out 일본(1966)	VI: 세제유인 및 보조금등 미국(1974), 독일(2001), 한국 등

자료 : 이용하(2010)

공사연금 역할 트렌드 (OECD 국가)

공적 연금 급여수준 인하, 연금수급기간 조정 등
(영국, 독일 등)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체계 마련 (일본, 칠레 등)

-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대체 (민간위탁), 적용제외 등

사적 연금의 가입 의무화(강제화) 추진 (호주, 아이슬란드 등)

- 강제적인 사적 연금제도 도입 등

사적 연금 제도의 활성화 유도 (미국, 캐나다 등)

- 과감한 세제혜택부여 등으로 사적 연금의 가입 유도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 연금의 역할

사적 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사적 연금제도의 현황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 방향



비전

사적 연금의 노후보장강화로 고령화 리스크 대응
-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적 보장 체계 전환 -

방향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 연금 혜택 강화
- 가입자 보호 및 참여중심으로 사적 연금 정책 전환
- 퇴직연금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계적 단일화
- 실질적 연금 전환 대책 마련으로 사적 연금제도 내실화
- 공사연금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한 소득복지방향 모색

구분

취약
계층보호

가입자
보호

퇴직급여
단일화

연금
전환대책

공사연금
역할 분담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 방향

■ 취약계층 보호

방향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 연금 혜택 강화

대책

-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원
 - 차상위 계층 등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설계 (연금수령 원칙)
 -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기여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퇴직연금가입 유도 검토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가입을 원칙적 허용
 - 퇴직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제도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 (우리나라: 시간기준에 의해 적용제외)
 - 장기적으로 적용제외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여 적용제외 기준을 재구성할 필요성 존재
 - 소득 및 연령기준 : 호주, 영국,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유인책 및 편의성 제공
 - 공동가입 표준 퇴직연금제도(DC형)를 적극 도입하고 최소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모색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 방향



■ 가입자 보호 및 참여

방향

가입자 보호 및 참여 중심으로 사적 연금 정책 전환

대책

□ 가입자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

- 사업자간 상호 견제기능 제고(제3자적 감시기능 제고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자행예금의 예외적 허용 금지,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취급 기준 마련 등

□ 현행 지배구조 내에서 가입자의 제도운용 참여 방안 모색

- 연금이사회 또는 퇴직연금관리 위원회 (가칭) 등을 설치하여 제도 운용에 대해 근로자 의견 반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현 시점에서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은 신중 검토(장기적 검토)
 - 기업 비용부담 문제,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문제, 노조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 사전적 보완장치 필요

□ 가입자 교육 및 공시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

- 교육 범위를 연금설계 등으로 확대, 최소한도의 가입자교육 지침 제시 및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등
- 3년 이상의 장기수익률 공시, 수수료와 수익률의 비교공시, 운용상품별 및 적립금 규모별 수익률 공시 필요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 방향

■ 퇴직급여 단일화

방향

퇴직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의무화)

대책

-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속하는 현실 반영하여 단일화 추진
 - 퇴직금제도 단점을 보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절실
 - 다만,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가입자 선호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 단일화보다 단계적 단일화 검토
 - 기업 규모, 기여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규모별에 따른 단일화 : 대기업 → 소규모 영세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등)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단일화(의무화) 검토
 - 영세사업장에 대한 제도 및 세제지원 병행하여 단일화 추진
- 기여형태별에 따른 단일화 : 사용자 기여분 → 근로자 기여분
 - 소규모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 방향

■ 연금전환

방향

실질적 전환대책 마련으로 사적 연금제도 내실화

대책

□ 사적 연금 세제 체계의 개선

-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저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 부여)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세제방식 이원화 : 별도의 퇴직연금세제 체계 마련으로 연금가입 유도 필요
- 연령별, 직종별(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가입자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세제 차별화 검토

□ 연금수령기준 완화 및 퇴직 급여시 연금으로 수령 의무화 : 부분의무화 검토

-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을 10년 이하로 대폭적 완화 필요
- 일부는 일시금 허용, 일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 연금화 제도 도입 검토
 - 단, 연금 수령을 위한 제도적 장치 사전 마련 (긴급필요자금 지원제도,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 도입 등)

□ 연금제도간 통산 및 연금지급 보장기능 제고

- 법정퇴직금까지 자동가입대상확대, IRP 중도 해지시 가산세 부과, IRP 자동가입연령의 상향조정(55세 이상)
- 40% 미적립 채무부분에 대해 신용보험제 도입. 예금보험 한도 5천만원 상향조정, 미국식 지급보장제 검토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 세액공제

구분	~1.2천만원	~4.6천만원	~8.8천만원	~3억원	3억원~
소득공제	6%	15%	24%	35%	38%
세액공제(15%적용시)	15%(+9)	15%(±0)	15%(△9)	15%(△20)	15%(△23)
세제영향	세혜택 증가		세혜택 감소		

☞ 지급보장

현행	방향	고려사항
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 적립	미적립채무 40%에 대해 신용보험제 도입검토 - 기업이 보험료 납입	- 기업의 보험료부담 가중 - 확정급여형 도입 기피
채권자 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퇴직급여의 우선변제기간 확대 - 평균근속기간 수준 (약7년)	법적 제도적 개선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필요 -기업부담고려: 정부지원 필요	-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 저성장기 기업의 보험료부담가중

IV. 사적 연금제도의 정책방향

■ 공사연금 역할 분담

방향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한 소득복지 방향 모색

대책

□ 전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설정 (1단계)

- 연금제도 로드맵 마련 : 공사연금간의 적정한 소득복지 수준제시 (적정 및 필요소득 대체율 수준 등)
- 사전적으로 사회적 합의 (정부,국민, 기업) 과정 필요

□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연계 방향 모색 (2단계)

- 향후 고령화 전망 등을 반영 : 모수적 개혁 또는 패러다임적 개혁의 방향 설정
- 패러다임적 개혁: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은 확정 기여형(DC형) 방식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으로 적용 제외(Contract out) 인정 필요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조정

□ 유기적 연계 구체화를 위한 Action Plan (3단계)

- 국민연금 및 사적 연금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 예 :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세제 지원, 제도 지원 등) 추진

감사합니다

kiri

